

정 정 신 고 (보고)

2019년 07월 3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: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[주식] 투자설명서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05월 19일
3. 정정사유
 1. 펀드온라인코리아 사명변경 반영
 2. 운용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
 3. 투자신탁결산에 따른 업데이트(재무제표 등)
 4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등 업데이트(운용규모, 재무현황)
 5.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4. 정정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I. 집합투자기 구개요	1. 펀드온라 인코리아 사명변경	S : 펀드온라인코리아 S-P : 펀드온라인코리아, 연금저축 계좌전용	S : 온라인판매시스템 가입자 S-P : 온라인판매시스템, 연금저축계 좌전용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(1)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 력	2. 운용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	가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: 최근일기준 업데이트(2019.07.22)
(2) 주요 투자 위험 및 위험 관리 3. 투자위험	3. 투자신탁결 산에 따른 업데이트	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% 이 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,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6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수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지니 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 률 변동성(연환산)은 8.8586%입니 다. (이하 생략)	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% 이 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,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6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수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 (연환산)은 9.8996%입니다. (이하 생 략)
제 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	연혁추가	<신설>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3. 운용전문인 력	2. 운용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	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: 최근일기준 업데이트(2019.07.22)
10. 집합투자기 구의 위험	3. 투자신탁결 산에 따른 업데이트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(1) 등급분류기준 - (중략) -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3년이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(1) 등급분류기준 - (중략) -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3년이

		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8.8586% 수준이므로 유경PSG자산 운용(주)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수준인 4등급(보통위험) 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(이하생략)	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9.8996% 수준이므로 유경PSG자산 운용(주)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수준인 4등급(보통위험) 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(이하 동일)
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3. 투자신탁결산에 따른 업데이트	제 3부 업데이트	제 3부 1.재무정보 : 최근결산기준(2019.06.12) 2.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: 최근결산기준(2019.06.12) 3.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: 최근결산기준(2019.07.22)
제 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4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(운용규모, 재무현황)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: 회계연도 기준 업데이트 (2018.12.31기준) 라. 운용자산규모 : 최근일기준 업데이트(2019.07.22 기준)
제 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5.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합니다.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 <신설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(이하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합니다.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(이하생략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업무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	5.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또는 전자우편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. (이하생략)	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. (이하생략)